

말레이시아(Malaysia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1년(적립금고)
- 현행법 : 1969년(사회보장); 1979년(비기여연금), 1982년 시행; 1980년(연금조정); 1991년(적립기금); 2012년(최저퇴직연령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, 적립금고제도, 사회부조제도
 - ※ 근로자 적립금고제도(Employees Provident Fund, EPF)는 55세 미만의 가입자를 위해 다음 2가지의 개인계좌(계좌1. 노후 준비 계좌, 계좌2. 지정된 악성 질환, 주택 구매 등의 지출을 위해 퇴직 전 인출 가능한 계좌) 제공함. 충분한 저축액이 있는 가입자들은 계좌 1 잔액 일부를 외부에 투자할 수 있음. 가입자가 55세 도달한 경우 계좌 1과 2는 하나의 단일 계좌로 통합되며(Akaun 55), 55세 이후의 보험료 납부를 위한 별도 계좌(Akaun Emas)가 생성됨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제도
 - 별도의 공공 부문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민간 부문 근로자 및 특정 공공 부문 근로자
 - 적용제외 : 자영자, 가내근로자, 기업 소유자의 배우자, 외국인 근로자
 - 특별제도 : 공공 부문 근로자 및 군인
- 적립금고제도
 - 견습생을 포함한 민간 부문 근로자 및 별도의 공공 부문 제도에 의해 보장받지 않는 특정 공공 부문 근로자
 - 임의적용 : 자영자, 가내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외 특정인
 - 특별제도 : 특정 공공 부문 근로자 및 군인
- 사회부조제도 :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빈곤층 국민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제도 : 45개의 임금등급에 따른 월 가입소득의 0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4,000 링깃(MYR)

- 적립금고제도
 - 60세 미만의 기금 가입자에게 월 소득의 11%; 60~75세의 기금 가입자에게 월 소득의 5.5%(2019년 1월 1일부로 0%), 55세 미만인 경우 월 보험료의 70%, 30%가 각각 계좌 1과 2에 할당됨. 55세 이상인 경우 월 보험료 납부액의 100%가 Akaun Emas 계좌에 할당됨)임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액 정도를 결정
 - 계좌 1에 대한 추가적인 임의 납부 가능
 - 의무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저소득은 10링깃이며;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저소득 없음
 - 의무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고소득 없음
 - 임의 가입자의 연 최고 보험료 : 60,000 링깃
 - 매년 근로자 적립 금고 가입자 보험료의 최대 6,000링깃까지 세금공제 가능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제도 : 해당없음
- 적립금고제도 : 임의납부
 - 연 최고 보험료 납부액 : 60,000 링깃
 - 납부 주기 선택가능
 - 매년 근로자 적립 금고자영자 가입자 보험료의 최대 6,000링깃까지 세금공제 가능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제도 : 45개의 임금등급에 따른 월 임금지급총액의 0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: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4,000 링깃
- 적립금고제도
 - 60세 미만의 월 소득이 최대 5,000 링깃인 가입자는 월 소득의 13%; 60세 미만의 월 소득이 최소 5,001 링깃 이상인 가입자는 12%; 60~75세의 기금 가입자는 6%(2019년 1월 1일 부로 4%). 55세 미만의 경우 월 보험료 납부액의 70%, 30%가 각각 계좌 1 과 2에 할당됨. 55세 이상의 경우 Akaun Emas 계좌에 월 보험료 납부액의 100%가 할 당됨
 - 추가적인 임의 납부 가능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제도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함
- 적립금고제도 : 55세 미만의 자영자와 가내근로자 가입자에 대해 연 최대 250 링깃 한도 내 보험료의 15% 지원 (계좌 1만 해당)
- 사회부조제도 : 총 비용 부담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급여(적립금고제도)

- 계좌 1, 2 저축액 전액 인출가능 연령은 55세; Akaun Emas 저축액 인출가능 연령은 60세(55세 이후로도 근로를 계속하는 가입자의 경우)
 - 가입자의 55세 정년퇴직은 의무가 아니며 금고(계좌 1과 2) 전부 또는 일부분을 인출할 수 있으며 100세까지 계속 근로 가능함. 55세에 기금을 인출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하는 가입자들은 근로자 적립금고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(Akaun Emas 계좌)
 - 55세에 모든 기금을 인출한 가입자는 계속 고용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가입 및 계속 근로자 적립금고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음
 - 이외의 인출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 가능 :
 - 국외이주인출(계좌1,2) :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이주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후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령 관계없이 인출 가능
 - 투자인출(계좌1) : 승인된 투자기관 투자를 위해 55세 이전에 인출가능. 가입자는 연령별 최소 저축액보다 적어도 5,000 링깃이상을 계좌에 보유하여야 함
 - 최소 저축액은 2,000 링깃(18세)부터 240,000 링깃(55세)까지임
 - 주택인출(계좌2) : 기금은 주택구매 또는 건축, 주택융자 또는 월 담보 대출금액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인출가능
 - 건강인출(계좌2) : 가입자 또는 특정 조건 하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를 포함한 자격이 있는 피부양자의 악성질환을 치료하게끔 가입자의 사용자가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출가능. 근로자 적립금고 지정 악성질환은 총 55개임
 - 교육인출(계좌2) : 고등교육 인증기관에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인출가능
 - 50세 인출(계좌2) : 50세 도달 시 계좌 2에 대해 일회적 인출이 가능함
 - 메카순례(Hajj)인출(계좌2) : 기금은 만약 기금 가입자의 Lembaga Tabung Hajj(LTH) 계좌의 저축금액이 충분치 않다면 가입자의 첫 메카 순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55세까지 인출 가능함. 기금 가입자는 "선택" 상태를 증빙하는 LTH로부터의 서신 및 불충분 저축액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함.(LTH 계좌의 목적은 성지순례를 위함이며 LTH는 이슬람 원칙에 근거하여 운용)
 - 모든 적립금고 급여는 해외지급 가능
- 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자산 및 소득조사)
 - 가족구성원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60세 도달자
 - 자산 및 소득조사 : 개인 및 가족의 소득 및 자산이 특정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됨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장애연금, 사회보험)

- 60세 미만으로 최소 소득능력의 66.7%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청구하기 직전 40개월 중 최소 24개월 동안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었어야 함; 또는 첫 보험 가입 후 기간 중 최소 66.7%의 기간, 최소 24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
- 부분연금 : 첫 보험 가입 후 기간 중 최소 33.3%의 기간, 최소 24개월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었어야 함
- 상시간호수당
 - 가입자가 일상(생활)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급
 - 보건부와 의 협의 하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정한 의학 위원회가 장애등급을 결정함
- 장애일시금(장애보조금, 사회보험)
 - 최소 소득능력의 66.7%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있으나 장애연금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되지 않아야 함
 - 보건부와 의 협의 하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정한 의학 위원회가 장애등급을 결정함
- 장애급여(Incapacitation Benefit, 적립금고)
 -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근로불가로 판정된 60세 미만인 자.
 - 근로활동이 중단되어 있어야 함
 - 추가 급여 : 건강상 사유로 실직한 55세 미만인 가입자에게 지급됨.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어야 함
 - 의사에 의해 진단된 가입자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 근로자 적립금고 의학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음
 - 모든 적립금고 급여는 해외지급이 가능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망 직전 40개월 중 최소 24개월의 가입기간이 있거나 첫 보험가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소 66.7%, 최소 24개월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.
 - 부분연금 : 사망자는 첫 보험가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소 33%, 최소 24개월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함
 - 수급자격이 되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,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(또는 대학학위 취득 할 때까지, 다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부모, 조부모, 및 21세 미만의 미혼인 피부양 형제자매를 포함함
 - 미망인(홀아비) 연금은 재혼 시에도 지속됨
- 유족급여(적립금고)
 - 지정된 수급자(이슬람교도가 아닌 자) 또는 관리자(이슬람교도)에게 지급됨. 지정된 수급자가 없는 경우 급여는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됨
 - 부가급여 : 사망자의 피부양자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됨. 가입자는 사망 시 60세 미만이었어야 함
 - 모든 적립금고제도 급여는 해외지급 가능
- 장제비(사회보험) : 가입자의 피부양자, 가장 가까운 친척, 또는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급여(적립금고)

- 가입자는 다음의 형태로 전부 또는 부분적인 인출가능 :
 - 일시금 인출(복리를 가산한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납부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뺀 금액); 75세까지 최소 1년 동안 월 최저 250 링깃 지급 ; 최저 월 2,000 링깃 수시 인출; 두가지의 혼합방식; 원금을 계좌 1에 유지시키고 오직 연 배당금만 수급
 - 최저 확정이자율은 연 2.5%임. 55세 이후로도 계좌잔액 보유할 경우 가입자는 계속 100세까지 복리를 얻을 수 있음
 - 국외이주인출(계좌1,2) : 복리 가산한 총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뺀 금액 지급
 - 투자인출(계좌1) : 최소필요저축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%까지 승인된 기관에 투자할 수 있음. 투자할 수 있는 최저금액 : 1,000 링깃
 - 최소필요저축액은 2,000 링깃에서(18세) 240,000 링깃(55세) 까지임
 - 주택인출(계좌2) : 최대 계좌잔액까지 가능
 - 건강인출(계좌2) : 총 의료비용 또는 계좌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됨
 - 교육인출(계좌2) : 총 교육비 또는 계좌잔액 중 적은 금액이 가입자 또는 고등교육 기관에 지급됨
 - 50세 인출(계좌2) : 최대 계좌잔액까지 가능
 - 메카순례(Hajj) 인출 : 메카순례(Haj)비용 및 메카순례 계좌(LTH)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, 최대 3,000 링깃까지 지급
- 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 : 월 350 링깃 지급

○ 영구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장애연금, 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장애발생 전 24개월 동안 가입자 월 평균 가입소득의 50~65% 지급
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: 3,950 링깃
 - 장애연금 월 최대금액은 장애발생 전 24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가입소득의 65%, 최대 2,567.70 링깃까지 가능
 - 부분연금 : 장애발생 전 24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가입소득의 50% 지급
 - 월 최저 장애연금 : 475 링깃
 - 상시간호수당 : 월 500 링깃 지급
 - 급여조정 : 사회보험급여는 생활비 및 사회보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됨
- 장애청산금(장애보조금, 사회보험) : 경과이자를 가산한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에 해당하는 총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- 장애급여(Incapacitation Benefit , 적립금고) : 복리를 가산한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총액에 이전 인출금액을 뺀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
- 최저 확정이자율은 연 2.5%임
- 부가급여 : 5,000 링깃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회보험 장애연금을 수급한 경우 장애연금의 100% 지급; 사망자가 사망 당시 근로중인 경우 보험료 납부횟수에 따라 사망 전 24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0~65% 지급
 -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됨 : 급여의 60%는 수급자격이 있는 미망인(홀아비)에게, 40%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됨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의 40%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, 30%는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 자녀(21세까지)에게 지급됨
 - 부분연금 : 사망 전 24개월 동안의 사망자의 월 평균소득의 50% 지급
 - 월 최저 유족연금 : 475 링깃
 - 급여조정 : 사회보험급여는 생활비 및 사회보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됨
- 유족급여(적립금고)
 - 복리를 가산한 총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납부금액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뺀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 - 최저 확정이자율은 연 2.5%임
 - 부가급여 : 2,500 링깃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장제비(장례급여, 사회보험)
 - 장례식 비용은 최대 2,000 링깃까지 가능
 - 급여조정 : 사회보험급여는 생활비 및 사회보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됨

7 관리운영기관

-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
 - <http://www.treasury.gov.my>
 - 적립금고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
- 근로자 적립금고(Employees Provident Fund)
 - <http://www.kwsp.gov.my>
 - 3자 관리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보험료와 급여지급 관리 및 가입자의 투자 담당
- 인적자원부(Ministry of Human Resources)
 - <https://www.mohr.gov.my>
 -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
- 사회보장청(Social Security Organization, SOCSO)
 - <https://www.perkeso.gov.my>
 - 3자 관리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, 사회보험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- 여성, 가족, 지역발전부(Ministry of Women, Family, and Community Development, KPWKM)
 - <https://www.kpwkm.gov.my>
 -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

- 사회복지부(Department of Social Welfare, JKMM)
 - 사회복지제도를 지사 통해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